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상정
- 제1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1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박 상 설)

가. 제안이유

-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안 제9조)

-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시정 운영관련 작은 제안이라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 제안제도의 운영에 따른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하여 많은 제안의 접수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안”이라 함은”을 ““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를 “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타 제안심사위원회”를 “그 밖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을 ““아이디어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시제안”이라 함은”을 ““실시제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모제안”이라 함은”을 ““공모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채택제안”이라 함은”을 ““채택제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을 ““자체우수제안”이란”으로 한다.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제4조제1항 중 “시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제안준비자”를 “제안자”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며, “제안준비자”를 “제안자”로 하고,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를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안 중”을 “제안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1인” 및 “7인”을 각각 “1명” 및 “7명”으로 하고, “수시구성”을 “구성”으로 하며, “제안업무 담당과장”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자로”를 “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를 “의결하거나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을 “제1항제2호 중에서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를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5조”로 한다.

제17조 중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한다.

제19조 본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따라”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아이디어어제안의 경우”를 “아이디어어제안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심사실무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조의 규정”을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을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을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20조 관련)

창안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500만원	90점 이상
은 상	300만원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80점 이상
장 려 상	50만원	70점 이상
노력제안	10만원상당의 기념품	제20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3호
의결 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제출년월일 : 2008. 11. 14.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
- 나.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안”이라 함은”을 ““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를 “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타 제안심사위원회”를 “그 밖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을 ““아이디어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시제안”이라 함은”을 ““실시제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모제안”이라 함은”을 ““공모제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채택제안”이라 함은”을 ““채택제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을 ““자체우수제안”이란”으로 한다.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제4조제1항 중 “시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제안준비자”를 “제안자”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하며, “제안준비자”를 “제안자”로 하고,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를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안 중”을 “제안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1인” 및 “7인”을 각각 “1명” 및 “7명”으로 하고, “수시구성”을 “구성”으로 하며, “제안업무 담당과장”을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자로”를 “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를 “의결하거나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을 “제1항제2호 중에서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를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5조”로 한다.

제17조 중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한다.

제19조 본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따라”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아이디어어제안의 경우”를 “아이디어어제안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심사실무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조의 규정”을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을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을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제20조 관련)

창안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500만원	90점 이상
은 상	300만원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80점 이상
장 려 상	50만원	70점 이상
노력제안	10만원상당의 기념품	제20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안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사사오입하여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 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u>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u></p> <p>다. · 라. (생략)</p> <p>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u>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u></p> <p>바. <u>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u></p> <p>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p>	<p>제2조(적용범위) ----- ----- ----- ----- -----<u>따른다.</u></p> <p>제3조(정의) ----- -----<u>뜻은 다음</u> <u>과</u>-----.</p> <p>1. “제안”이란-----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u>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u></p> <p>다. · 라. (현행과 같음)</p> <p>마. ----- <u>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u>-----</p> <p>바. <u>그 밖에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u>-----</p> <p>2. “아이디어제안”이란----- -----</p>

현행	개정안
<p>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p> <p>3. “<u>실시제안</u>”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p> <p>4. “<u>공모제안</u>”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p> <p>5. “<u>채택제안</u>”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p> <p>6. “<u>자체우수제안</u>”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p> <p>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u>시 소속공무원</u>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p> <p>② (생략)</p> <p>제6조(<u>제안준비자</u>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u>소속 공무원</u>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p>	<p>----- -----.</p> <p>3. “<u>실시제안</u>”이란----- ----- ----- -----.</p> <p>4. “<u>공모제안</u>”이란----- ----- ----- -----.</p> <p>5. “<u>채택제안</u>”이란----- ----- -----.</p> <p>6. “<u>자체우수제안</u>”이란----- ----- -----.</p> <p>제4조(제안의 제출) ① -----<u>공무원</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u>제안자</u>에 대한 지원) ----- -----<u>공무원에게</u>----- -----</p>

현행	개정안
<p>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 <u>제안자</u>----- -----<u>제작할 때에</u> <u>는 시에서</u>----- ----- ----- -----.</p>
<p>제7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p> <p>③제3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p>	<p>제7조(제안의 접수) ① -----<u>제4</u> <u>조</u>----- ----- ----- -----.</p> <p>② -----<u>제안 중에서</u>----- ----- -----.</p> <p>③ <u>제3조제1항에 따라</u>----- ----- ----- ----- -----.</p>
<p>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p> <p>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9조(제안의 심사)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p> <p>1. <u>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u></p> <p>2. <u>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1. 제안의 채택여부</p> <p>2. 창안등급의 결정</p> <p>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p> <p>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p> <p>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p>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생략)</p> <p>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 운영한다.</p> <p>③ (생략)</p> <p>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p>	<p>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p> <p>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1명-----구 -----7명-----성-----제안주무 부서의 장-----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인정하는----- -----.</p>

현행	개정안
<p>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u>관계자</u>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⑥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u>의결 또는 심사위원회</u>에 상정한다.</p>	<p>⑤ ----- ----- --<u>공무원으로</u>----- -----.</p> <p>⑥ ----- -----<u>의결하거나 위원회</u>-----.</p>
<p>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전문위원은 제안의 <u>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u> 중에서 <u>시장이 위촉</u>한다.</p> <p>③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u>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p>	<p><삭 제></p>
<p>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u>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생략)</p> <p>1.~5. (생략)</p> <p>② 제1항제2호중 <u>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u>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u>1월</u>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u>채택한 제안에 대하여</u>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u>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u> 하여야 한다.</p>	<p>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2호 중에서 <u>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u>-----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u>1개월</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을</u> 실시부서의 장이----- -----.</p>
<p>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u>저작권법</u>」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p>	<p>제15조 (의견조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저작권법」에 따라</u>----- -----</p>

현행	개정안
<p>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u>심사위원회</u>는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의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p> <p>⑤ (생략)</p> <p>제21조(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p> <p>1.~3. (생략)</p> <p>②상여금의 지급액은 <u>제28조의</u>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p> <p>③ (생략)</p> <p>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p>	<p>③제2항----- -----<u>심사실무위원</u> ----- -----.</p> <p>④ <u>제13조에</u> 따른----- ----- -----<u>제1항에</u> 따른----- ----- ----- ----- -----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상여금 지급) ① ----- ----- -----<u>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 ----- ----- -----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u>제28조</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그 밖의 보상) -----</p>

현행	개정안
<p>의 전시 등의 <u>필요에 의하여 제안자</u>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p>	<p>-----<u>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u>----- ----- -----.</p>
<p>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p> <p>② (생략)</p>	<p>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 --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마일리지 포상) ① (생략)</p> <p>②마일리지 점수는 제안자 및 실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u>1인</u>에게만 부여한다.</p> <p>③ (생략)</p> <p>④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p>	<p>제29조(마일리지 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명</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따른다.</u></p>
<p>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0조(시행규칙) -----<u>시행에</u> ----- -----.</p>